

# 재외선거 안내문 <제27호>



제공일자 2011. 8. 3.

☎ 82-2-503-0648  
FAX 82-2-507-4352

## 재외선거 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내용

### ▣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

개 정 전	개 정 후	비 고
여권만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여권·주민등록증·공무원증·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</li> <li>■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</li> </ul>	

### ▣ 재외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

개 정 전	개 정 후	비 고
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(자서식)를 작성하여 재외선거인 등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냄	좌 동	
	<p>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(기표식)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.</p> <p>※ 다만, 기계장치 이용 투표용지 작성·교부는 중앙선관위의 사전의결(결정)이 필요함.</p>	

◆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(<http://ok.nec.go.kr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